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가합5499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봉태

변 론 종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물품에 관하여 2019. 9. 23.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9,904,8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물품납품계약 체결

1) 원고는 2019. 5. 2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미군부대 납품용 자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미화 1,157,703.84달러(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고, D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90일내에 현금(한화 또는 달러로 지급)으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정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6. 위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을 모두 D에 납품하고 2019. 6. 26. 공급가액 1,517,217,724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2019. 6. 25. D과 미군부대 납품용 자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미화 964,594.94달러(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고, D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90일내에 현금(한화 또는 달러로 지급)으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정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 2)항 기재 각 납품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9. 8. 위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을 모두 D에 납품하고 2019. 8. 7. 공급가액 1,268,416,435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채무변제계약 체결

1) 피고는 D과 별지2 계약체결 내역 기재와 같이 각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각 납품계약에 따라 물품을 D에 납품하였으나, D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9. 7.경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변제기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피고는 2019. 7. 19. D과 별지2 표 중 '변제기'란의 기재와 같이 D의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D은 별지2 표 중 'D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에 따른 채무 중 일부를 피고에게 변제하였으나, 2019. 8. 31. 이후로는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

피고는 2019. 9. 23. D과 사이에 D이 피고에게 별지1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는 위 물품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D에 대한 미수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고 D은 위 충당된 금액만큼 그 채무를 면제받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이 사건 물품의 처분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관하던 중 2020. 4. 24. 이 사건 물품 중 F사의 통신관련 제품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179,904,867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매각하였고, 2020. 5. 1. 나머지 물품은 시장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폐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인 D이 원고 및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 의사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합의는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물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179,904,867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합의 시 D은 H 등에 대하여 약 200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D이 H 등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D이 무자력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또한 이 사건 합의는 D이 피고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것에 해당하며,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합계 2,785,634,159원(= 1,517,217,724원 + 1,268,416,435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D의 무자력 여부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5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할 무렵 피고에 대하여 3,501,743,974원, 원고에 대하여 2,785,634,15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I주식회사, J은행 등 채권자들에 대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합계 약 2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각 채무 중 K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등 일부 채무는 이 사건 합의일인 2019. 9. 23.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 무렵 D과 각 채권자 사이에 이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채무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실제로 각 채무가 발생하여 채권자들이 D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채무 역시 소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점, ③ D은 이

사건 물품 및 주식회사 L에 대한 686,286,461원의 물품대금채권, 강원도 평창군 M 토지 및 지상 건물(D은 위 각 부동산을 2019. 12. 3. 매매대금 1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합의시에는 D이 H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N에 대하여도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위 각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납품의무를 이행하여 위 회사들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와 피고 역시 D이 주식회사 N에 대하여 채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L 및 H 주식회사만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 압류 및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 D의 주식회사 N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D이 피고에게 2019. 7.경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H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은 비고란에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협의 중’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확인되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H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원피고 외에도 J은행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거나 피고가 D을 대신하여 이 사건 물품을 매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는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다만 이로 인하여 면제되는 채무 액수를 향후 피고가 위 물품을 매각하여 얻게 되는 실제 매각대금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질 무렵 D의 무자력 상태가 중하고, D은 피고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통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만큼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경영을 정상화하여 변제자력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D이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물품을 미군부대에 납품하여 건설사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해줄 업체를 물색하였으나 매입처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이 사건 물품을 장부가가격의 40%에 매각하겠다고 제안한 G에 매각한 점, 피고는 O는 더 높은 가격을 제안하였으나 이 사건 물품의 일부만을 매수하겠다고 밝혀 G에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¹⁾ D이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지 않고 미군부대에 납품하였으면 피고가 매각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는 D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 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2019. 7. 9. 피고에게 채무변제기의 유예를 요청한 점, D이 피고에게 보낸 변제계획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D이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다시 L 등에 납품한 결제대금을 이용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자금조달 방안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는 위와 같은 D의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2019. 7. 17.경 D이 변제계획을 수정하여 재차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여 2019. 7. 19.경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위와 같이 변제기를 유예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D은 경영이 악화되어 2019. 8. 31.경부터²⁾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위와 같은 변제기 유예 등의 과정에서 D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합의는 D이 미군 부대에 납품할 예정이던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합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D이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여 변제자력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무렵인 2019. 9. 24.경 D의 H 및 L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D의 재무상황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취소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2019. 9. 23.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이 사건 합의)은3)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가액반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이 사건 물품의 가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가액 179,904,8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석근, 판사 조용희, 판사 남민영

별지

목록

2019 6월 재고 현황 (미군부대)								
수배전압용								
NO	품 명(품명)	재제상명(소속)	재제 명보	단위	재고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PANEL FRONT	-	-	EA	9	98.00	728.00	
2	PANEL INTERIOR	-	-	EA	3	300.00	800.00	
3	CIRCUIT BREAKER	SMALL	-	EA	100	5.00	500.00	
4	CIRCUIT BREAKER	MEDIUM	-	EA	99	35.00	3,465.00	
5	CIRCUIT BREAKER	LARGE	-	EA	10	200.00	4,700.00	
6	LOAD CENTER	-	-	EA	1	25.00	25.00	
	SUB TOTAL						10,808.00	
중계기재기								
NO	품 명(품명)	재제상명(소속)	재제 명보	단위	재고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SAFETY SWITCH	GENERAL DUTY	30A	EA	24	30.00	720.00	
2	SAFETY SWITCH	GENERAL DUTY	60A	EA	8	60.00	480.00	
3	SAFETY SWITCH	GENERAL DUTY	100	EA	1	100.00	100.00	
4	SAFETY SWITCH	HEAVY DUTY	30A	EA	10	40.00	400.00	
5	SAFETY SWITCH	HEAVY DUTY	60A	EA	10	60.00	600.00	
6	MOTOR STARTER	WIRING	-	EA	2	200.00	400.00	
7	SWCB	100A	-	EA	5	180.00	900.00	
	SUB TOTAL						4,110.00	
배선 기구								
NO	품 명(품명)	재제상명(소속)	재제 명보	단위	재고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RECEPTACLE	일반	-	EA	1,000	3.00	3,000.00	
2	RECEPTACLE	10P	-	EA	100	10.00	1,000.00	
3	RECEPTACLE	10P	-	EA	21	10.00	210.00	
4	RECEPTACLE	WR	-	EA	90	16.00	1,440.00	
5	RECEPTACLE	HOSPITAL	-	EA	70	24.00	1,680.00	
6	RECEPTACLE	COVER	-	EA	900	1.00	900.00	
	SUB TOTAL						7,230.00	
전기 기구								
NO	품 명(품명)	재제상명(소속)	재제 명보	단위	재고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HUB	3/4"	-	EA	2,000	0.50	1,000.00	
2	HUB	2"	-	EA	2	1.00	2.00	
3	HUB	4"	-	EA	2	1.00	2.00	
4	FUSE	10A	-	EA	20	10.00	200.00	
5	FUSE	25A	-	EA	2	10.00	20.00	
6	FUSE	30A	-	EA	8	10.00	80.00	
7	FUSE	40A	-	EA	17	20.00	340.00	
8	FUSE	50A	-	EA	10	30.00	300.00	
9	FUSE	110A	-	EA	2	60.00	120.00	
10	LUB	WHOLE	-	EA	412	3.00	1,236.00	
11	LUB	WHOLE	-	EA	200	5.00	1,000.00	
12	LUB	기타	-	EA	6	10.00	60.00	
13	OVERLOAD HEATER	-	-	EA	70	12.00	840.00	
14	KNOCK OUT COVER	3/4"	-	EA	100	3.00	300.00	
15	KNOCK OUT COVER	1/2"	-	EA	100	3.00	300.00	
16	KNOCK OUT COVER	1"	-	EA	100	3.00	300.00	

17	SINGLE GANG BOX 3W	-	EA	132	8.80	1,216.00	
18	LOCKING DEVICE	-	EA	1,230	0.50	615.00	
19	NEUTRAL	-	EA	30	2.50	75.00	
	SUB TOTAL					9,896.00	
표명가구							
NO	종 명(종)	자재상명(소재)	자재 명	단위	재료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문합물	-	-	EA	13	65.00	715.00
2	벽물	-	-	EA	8	35.00	280.00
3	벽합물	-	-	EA	12	85.00	1,020.00
4	기호물	-	-	EA	13	150.00	1,950.00
5	EXIT SIGN	-	-	EA	22	150.00	3,300.00
	SUB TOTAL					7,000.00	
필요							
NO	종 명(종)	자재상명(소재)	자재 명	단위	재료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T4			EA	246	11.00	2,706.00
	T8			EA	226	3.00	678.00
2	MODUL			EA	30	28.00	840.00
4	벽합접구			EA	7	3.00	21.00
	SUB TOTAL					4,225.00	
표명자재							
NO	종 명(종)	자재상명(소재)	자재 명	단위	재료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OCCUPANCY SENSOR CEILING			EA	40	190.00	7,600.00
2	OCCUPANCY SENSOR WALL			EA	90	120.00	10,800.00
3	인원 센서			EA	10	85.00	850.00
4	POWER PACK			EA	10	80.00	800.00
5	TOGGLE SWITCH			EA	20	3.00	60.00
6	TOGGLE COVER			EA	140	6.00	840.00
7	SLIDE DIMMER			EA	5	80.00	400.00
	SUB TOTAL					20,890.00	
표명가구 기타							
NO	종 명(종)	자재상명(소재)	자재 명	단위	재료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배터리 BATTERY	-	-	EA	204	75.00	15,300.00
2	봉시걸	-	-	EA	5	15.00	75.00
3	스위치를 받거	-	-	EA	300	20.00	6,000.00
4	기호물 벽쪽 끝자	-	-	EA	80	15.00	1,200.00
5	FLANGE HIT	-	-	EA	3	70.00	210.00
6	필드 용접	-	-	EA	13	1.00	13.00
	SUB TOTAL					24,818.00	
	TOTAL:					50,530.00	

2019 8월 재고 현황								
UTP Cable								
NO	품 명(품명)	자재설명(스펙)	자재 정보	단위	재고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700211884	1071E 1.8 423 W1000	CAT.8 Light Blue	FT	19,800	8.128	2,428,368	
2	700211821	1071E BL 423 W1000	CAT.8 Blue	FT	28,800	8.128	3,566,784	
3	700211886	1071E YL 423 W1000	CAT.8 Yellow	FT	-	8.130	-	
4	700094899	1071E BL 423 W1000	CAT.8 Blue	FT	-	8.130	-	
5	700197078	1091B BL 423 W1000	CAT.8A Blue	FT	22,800	8.197	2,388,906	
6	700197182	1091B LBL C8A 423 GR/TP W1000	CAT.8A Light Blue	FT	-	8.189	-	
7	700208316	1081F BL 2504 R3000	CAT.8E Blue	FT	-	8.770	-	
SUB TOTAL :							12,341,000	
UTP Cord								
NO	품 명(품명)	자재설명(스펙)	자재 정보	단위	재고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CPC3313-03F010	SSSE-00-10FT	RJ45 to RJ45, 3m, Dark Gray	EA	300	6.174	2,566,765	
SUB TOTAL :							2,566,765	
FD Cable								
NO	품 명(품명)	자재설명(스펙)	자재 정보	단위	재고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700218982	PL802-2C-5L-F18A0	2Core Multi OM3 Aqua Indiver	FT	-	8.183	-	
2	700208189	PL813-5B-5L-F8JHQ	2Core Multi OM3 Aqua Indiver	FT	-	1.378	-	
SUB TOTAL :							-	
FD Connector								
NO	품 명(품명)	자재설명(스펙)	자재 정보	단위	재고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700034187	MOD-LCR-10-80	LC Duplex 1.8mm Multi	EA	1,000	8.883	8,883,000	
SUB TOTAL :							8,883,000	
FD Card								
NO	품 명(품명)	자재설명(스펙)	자재 정보	단위	재고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PEXLCCLC11-40P000	40GTA1_RSR_8B_1.8mm LC/CAC/PT	1C to Pigtail, 0.8mm, OM4	EA	250	8.814	2,153,510	
2	PEXLCCLC43-40P010	JUMPER_RSR_1.8, 1.8mm, DUPLEX LC/CAC/PT	LC to LC, 1.8mm, OM4	EA	68	21.846	1,500,888	
3	PEXLCCLC43-40P080	LowSPEED LC to LC 3C 3MM (Pass)	LC to LC, 1.8mm, OM4	EA	10	54.178	541,780	
4	PEXBCRC43-40P020	LowSPEED SC to SC 3C 3MM (Pass)		EA	8	25.138	201,104	
SUB TOTAL :							4,404,048	
Patch Panel								
NO	품 명(품명)	자재설명(스펙)	자재 정보	단위	재고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700100001	360-4P0-1100-0-000-1U-24	OM3, CAT.8, 1u - 24port	EA	5	182.380	791,400	
2	700100047	360-4P0-1100-0-000-1U-24	OM3, CAT.8A, 1u - 24port	EA	1	172.897	172,897	
SUB TOTAL :							964,297	
PDP								
NO	품 명(품명)	자재설명(스펙)	자재 정보	단위	재고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700100303	360G3-1U-MOD-FX	Shelf	EA	-	88.879	-	
2	700100206	360G2 Cartridge 13-LC-LS-A0	Cartridge	EA	-	18.842	-	
3	700000007	PS-24P-100P PatchBay / 2 Pos Spl Tray	Tray	PS	11	20.890	227,480	
SUB TOTAL :							227,480	
Faceplate								
NO	품 명(품명)	자재설명(스펙)	자재 정보	단위	재고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100100419	M12L-240 FACEPLATE	IV	EA	10,100	-	-	
2	100100477	M12L-240 FACEPLATE	IV	EA	10,100	-	-	
3	100100519	M12L-240 FACEPLATE	IV	EA	174	10,100	1,757,365	

4	108188509	M14L-246 FACE PLATE	IV	EA		10.100	-	
5	108188502	M18L-246 FACE PLATE	IV	EA		10.100	-	
6	108258427	M10L-262 FACEPLATE	WH	EA		10.100	-	
7	108188408	M12L-262 FACEPLATE	WH	EA		10.100	-	
8	108188501	M18L-262 FACEPLATE	WH	EA		10.100	-	
9	108188543	M14L-262 FACEPLATE	WH	EA		10.100	-	
SUB TOTAL :								1,797,265
Outlet Module								
NO	품 명(PNO)	자재 설명(S/R)	자재 명칭	단위	제고 수량	단가	합계	비고
1	700096726	M05405 WHITE OUTLET	M05405-262	EA	1,700	5,350	9,095,040	
2	700092428	M05600 WHITE OUTLET	M05600-262	EA		8,400	-	
SUB TOTAL :							9,095,040	
TOTAL :							97,896,305	

별지2

피고와 D 사이의 납품계약 및 채무변제계약(2019. 7. 19.) 체결내역⁵⁾

납품계약	납품 계약 체결일	변제기	분할 채무액(원)	세영 변제금액(원)
 설비자재 납품계약	2017. 9. 13.	2019. 7. 31.	46,347,840	46,347,840
		2019. 8. 31.	351,000,000	351,000,000
		2019. 9. 30.	727,146,378	
		2019. 10. 31.	221,319,830	
		소계	1,345,814,048	
		공정증서 2019년 제793호(갑 제3호증의 3) 참조		
 소방자재 납품계약	2017. 10. 30.	2019. 7. 25.	266,060,906	266,060,906
		2019. 8. 15.	404,743,878	
		2019. 9. 30.	77,853,622	
		2019. 10. 31.	208,417,751	
		소계	957,076,157	
		공정증서 2019년 제792호 (갑 제3호증의 2) 참조		
 전기조명기자재 납품계약	2017. 3. 31.	2019. 8. 31.	384,962,537	
		2019. 9. 30.	324,003,394	
		2019. 10. 31.	225,128,171	
		소계	934,094,102	
		공정증서 2019년 제791호 (갑 제3호증의 1) 참조		
 외자재 납품계약	2017. 5. 30.	2019. 8. 10.	133,639,976	
		2019. 8. 15.	423,395,751	
		2019. 8. 31.	550,225,388	
		2019. 9. 10.	460,520,500	
		2019. 10. 31.	255,922,945	
		소계	1,823,704,560	
		공정증서 2019년 제794호(갑 제3호증의 4) 참조		
합계			5,060,688,867	663,408,746

5) 다만 아래 표 중 P 전기조명기자재 납품계약 체결일은 2016. 10. 31.이며 '2017. 3. 31.'은 오키로 보이므로 이를 '2016. 10. 31.'로 정정한다.

별지3

D의 소극재산 내역

번호	채권자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금액	비고
1	B 주식회사	3,501,743,974	부천지원 2019타채39820 채권압류 및추심명령 (갑 제7호증)
2	I 주식회사	2,500,000,000	부천지원 2019타채40114 채권압류 및추심명령 (갑 제8호증)
3	J 주식회사	1,544,769,464	부천지원 2019카합103 채권가압류 (갑 제9호증)
4	Q 주식회사	6,000,032,400	부천지원 2019타채40794 채권압류 및추심명령 (갑 제10호증)
5	주식회사 R	1,540,534,622	부천지원 2019카합121 채권가압류 (갑 제11호증)
6	주식회사 S	236,40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39585 채권가압류 (갑 제12호증)
7	주식회사 T	298,732,742	부천지원 2019카합117 채권가압류 (갑 제13호증)
8	주식회사 A	2,785,634,15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단70145 채권가압류 (갑 제14호증)
9	U 주식회사	3,710,722,381	부천지원 2019카합10386 채권가압 류 (갑 제15호증)
10	K 주식회사	100,000,00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단204551 채권가압류 (갑 제16호증)
11	(선정당사자) V	185,280,624	부천지원 2020타채30745 채권압류 및추심명령 (갑 제17호증의 1)
12	(선정당사자) V	139,136,456	부천지원 2020타채31392 채권압류 및추심명령 (갑 제17호증의 2)
13	K 주식회사	103,048,79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채104934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갑 제18호증)
합계		22,646,035,615	

1) 2020. 8. 21.자 준비서면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2019. 8. 31. 피고에 대한 일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로는 이 사건 합의시까지 피고에게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가 대물변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가 대물변제계약에 해당하며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면제되는 채무의 액수만 추후 실제매각되는 금액으로 확정하기로 정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